

우리나라 영양정책과 영양전문 인력 현황

문 현 경 (단국대학교 교수)

1. 영양전문 인력 현황

우리나라의 영양정책을 살펴보면 있어서 우선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영양전문인력의 현황과 현재 실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업무분야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영양정책이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영양전문인력의 현황이 반드시 영양정책에만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활동정도는 국가의 정책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양전문가라고 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에서부터 영양학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식박사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고자하는 영양전문인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영양사로 국한을 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영양학은 1929년 이화여자전문학교에 가정과가 창설되면서 과학지식에 근거한 영양학을 교육하기 시작하여 1945년 해방이후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더불어 영양학 교육을 가정과 교과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책정하게 되었다. 영양사는 1950년대 후반부터 가정교육과 출신의 이 학사가 병원에서 급식책임자로 일하게 되면서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과 더불어 영양사 면허제도가 법으로 명시되었다. 처음으로 영양사를 배출한 대학은 1964년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영양사를 배출한 덕성여자초급대학과 명지초급대학이었다. 영양사 양성교육기관은 매년 배출학교가 증가되어 2000년 현재 총 123개교 125개학과(전공)로 증가되어 표 1과 같이 매년 약 9,000여명의 졸업자가 배출되고 있다. 현재 영양사를 배출하는 학과(전공)들은 가정대학(학부)이나 생활과학대학(학부) 또는 가정계열, 자연과학대학(학부)등 학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속해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에 따라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영양사 면허는 1964년부터 영양사 양성 대학 학과 졸업자에게 면허증이 발급되어 오다가 1978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보건원 고시과, 1998년 5월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을 통해 영양사 면허를 주고 있는데, 2000년 현재 82,139명의 면허소지자가 배출되었다(표 2).

표 1. 영양사 양성교육기관 현황

교육기관	1964년	1966년	1970년	1980년	1988년	1995년	2000년	
	기관수	기관수	기관수	기관수	기관수	기관수	기관수	총정원
4년제대학교	0	5	5	19	43	61	69개교 71개학과(전공)	3,053명
2년제 대학	2	1	7	16	76	51	53개교 54개학과(전공)	5,900명
계	2	6	12	35	79	112	123개교 125개학과(전공)	8,953명

표 2. 연도별 영양사 면허소지자수

	1964-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면허취득자수 (명)	56,196	60,202	64,931	69,277	74,059	78,351	82,139

영양사는 1967년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배치가 법제화되면서 급식학교에 정규보건직 영양사가 임용되기 시작하였고, 1982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원에서의 영양사 배치가 명시되면서 병원에서의 영양사 활동이 증가하게 되었다. 1999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면서 100인 이상 시설에 영양사 배치가 명시되었고,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이 제정되고, 이어 1997년 보건소 「보건의료 전문인력 전문인력 배치기준」에 영양사가 포함되어 영양개선사업의 수행자로 전국 보건소에 영양사 배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영양사 배치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영양사는 사회발전과 법 제도의 개선으로 사업체, 학교, 병원등의 집단급식소에 진출하여 급식관리 및 임상영양업무, 보건소등에서 지역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영양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특수시설, 급식전문업체등에서 일하고 있고 기타 식품회사나 연구기관, 스포츠 건강센터, 영양정보센터 등에서 일부 활동하고 있다(표 3).

2000년 대한영양사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된 영양사의 수는 약 10,329명으로 학교 40.4%, 사업체 36.6%, 병원 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분야별 취업 영양사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3. 영양사의 취업분야 현황

구 분		세 무 분 야
집단 급식소	사 업 체	기업, 관공서, 대학(기숙사, 식당), 금융기관, 호텔, 백화점, 연구소, 연수원 등
	학 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병 원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한의원, 군병원, 산부인과, 건강증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질환자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결핵 나장애 복지시설 등
	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
	특수시설	직업훈련기관, 캠프수련장, 교정시설, 선수촌, 군대, 선박 등
비집단 급식소	보 건 소	보건소
	급식산업	급식위탁회사, 급식생산업체(도시락), 건강식품상담업체, 외식산업(조리지도, 식단개발 등)
	기 타	대학, 연구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식품회사, 요리학원, 스포츠헬스센터, 매스컴관련업, 영양정보센터 등

(자료 : 대한영양사회 현황 2000)

표 4. 영양사의 분야별 취업현황(2000년 1월 기준)

구 분	분 야	사 업 체					총 계
		사업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포함)	특수시설	
집단 급식소	취업인원(명)	3,777	4,176	944	195	124	9,092
	비 율 (%)						
	분 야	36.6%	40.4%	9.1%	1.9%	1.2%	88%
비집단 급식소	분 야	교육 및 연구직	급식산업	행정직 공무원	보건소	기타	총계
	취업인원(명)	268	731	45	69	193	1,237
	비 율 (%)	2.6%	7.1%	0.4%	0.7%	1.9%	12%

(자료 : 대한영양사회 현황 2000)

현재 취업 영양사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총 취업 영양사수는 10,329명으로 면허소지자 대비 취업률은 13.2%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취업 분야도 집단급식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병원에 있는 영양사들의 경우 일부 대학 병원의 경우 임상영양서비스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 병원에서는 영양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급식관리가 주업무가 되고 있다.

영양사의 업무를 보면 크게 급식관리와 영양서비스로 나누는데, 현재 취업된 영양사의 분야는 급식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영양사의 정의를 살펴보아도 영양사의 업무가 영양서비스의 제공이 주인데 현재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영양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시도된 바 있다. 1980년 유럽영양사회연합은 영양사를 「식품과 영양학의 분야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양에 관한 과학을 건강하거나 질병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급식하고 교육하는데 응용하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영양학, 생화학, 식품학, 생리학, 경영학과 행동과학, 사회과학의 원리를 통합하고 적용하는 식이영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본의 경우 영양사법에 「영양의 지도에 종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국제직업표준분류(ISCO)에서 영양사란 「개인 또는 집단의 식사를 마련하는 것을 계획·감독하고, 보건증진 프로그램의 영양관련 부분을 감독·평가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식품영양문제와 관련된 요인들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로, 이들의 역할은 「병원이나 기관에서 개인 또는 집단을 위한 치료식 및 기타 식사를 계획·감독하며, 영양교육 프로그램 및 영양 재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영양문제 및 보건 프로그램의 영양적 측면에 대한 조언과 함께 영양 프로그램의 계획 및 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2000년 1월 7일 개정고시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영양사를 보건의료 전문가로 분류하여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영양기법 및 응용에 관하여 연구·개발하고, 전문적인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관해 조언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업무는 「영양기법과 응용에 관하여 연구·개발하고 이들을 적용하고, 병원에서 개인, 집단 또는 특정부문의 근로자를 위해 영양기법 및 기타 섭식의 준비를 기획 및 지휘하며, 영양교육 및 영양증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 및 지역사회 식품문제 및 보건프로그램의 영양부문에 관한 조언, 관련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 전문가와 접촉을 유지, 영양에 관한 대화 및 강의를 하는 곳」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 정의를 내리자면 「식품·영양의 전문인으로 법적 자격을 인정받아 식품과 영양관련 분야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영양사들은 한정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양사의 업무내용이 급식관리를 주로 하도록 하

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상의 영양상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 |
|--|
| 법상의 업무-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영양사의 직무)
①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②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③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④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⑤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
|--|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법인데 우리의 법상으로는 영양사의 업무를 주로 급식관리에 한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양사에 관한 주요 법률에 영양상의 업무정의가 한정적이라는 것은 우리 정책당국자의 영양사의 업무에 대한 한정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식생활의 사회화가 확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많은 영양전문인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2. 우리나라 영양정책

국가의 영양정책은 보통 양적인 영양정책(Quantitative Nutrition Policy)과 질적인 영양 정책(Qualitative Nutrition Policy)으로 나눌 수 있다.

양적인 정책은 전체 국민들에게 충분한 식품을 공급해 주어서 영양 부족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충분한 식품이 공급되더라도 분배의 문제가 있어서 국가 정책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질적인 영양정책은 식품의 양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식품 공급이 균형 있는 식품 섭취로 이어져, 식생활로 인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식생활이 만성퇴행성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개념의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양정책의 경우 양적인 영양정책은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을 농업정책이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영양적인 고려가 되고 있지는 못하다.

우선 농업정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이후 쌀생산이 농업정책의 주요과제였다. 우리

의 농업정책의 성공으로 충분한 쌀의 생산으로 과거의 쌀부족시대에서 쌀이 남아도는 시대가 되었다. 다른 식품들의 경우는 전반적인 자급율은 4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수입과 생산을 통해 충분히 공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국민들이 소비할 충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할때 영양이 고려가 되었다면 우리의 농업정책은 생산과 소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정책을 살펴보면, 국가 경제 측면에서 다루어진 농업생산 정책뿐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정책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생산적 복지이다. 과거의 선성장 후 복지의 패러다임의 성장은 위기 극복과 복지의 병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생산적복지는 새로운 개념으로 한국적 복지의 제도적 접근으로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일할 권리와 기초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복지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존중'이라는 헌법(제10조)정신에 기초한 사회정의 실현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생산적 복지의 기본틀 구축을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에 최대 월 92만원까지의 의·식·주와 균등한 배움의 기회를 최소한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권',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등 여러 가지 정책구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애쓰고는 있으나 정책이나 법의 내용에 식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본 식생활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사용되어져 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 식생활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으며, 이렇게 국민 식생활을 양적, 질적으로 보장하여 국민의 영양상태를 좋게 하여 결과적으로 건강이 좋아서 국민 의료비의 감소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정책 내용을 보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식생활에 대한 정책이 없다. 식생활의 양적인 면은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식생활의 질의 보장을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보아도 실정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5대 중점추진과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강화, 노인·장애인등 취약 계층의 복지사업 내실화,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보건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이다. 여기서도 국민의 식생활을 보장하고, 영양상태를 향상시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볼 때 국민의 식생활은 양적 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우리 정부의 정책은 과거에는 우리 나라가 식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의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적인 생산 증산 정책이 주요 정책이었고, 이제 쌀의 경우 필요

한 충분한 증산이 이루어졌고, 다른 식품은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으므로 농업 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면만을 위한 정책이고, 복지나 보건 정책은 기본적인 식생활의 양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만으로 식생활의 질을 위한 질적인 영양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 식생활과 연관되어 하고 있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이것은 식생활의 목적인 영양섭취와 그 결과인 국민건강과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을 수행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을 살펴보겠다. 법 중에서 영양과 관련하여 관련사항이 언급되어 있는 법을 보면,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여기서는 각 해당 분야에서 국민이 식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관리자로서 영양사가 일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제정된 이 법들조차도 내용에 들어가서는 법의 수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 법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아무 제재 조치도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조직이나 인원조차 이 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이 법에 명시된 사항만이라도 수행이 된다면 많은 영양사업이 계획되고 수행될 것이다.

정책이나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나라의 정부 조직을 보면 영양을 담당하는 부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의 계에서 1명이 우리 나라의 영양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 정책의 방향은 건강증진법의 제정등 질병진료 체계에서 건강증진 체계로 바뀌어 왔으나, 현재 보건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영양정책은 보건 정책의 일부로 보건정책이나 사업이 확대되고 영양이 건강증진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되지 않는 한 영양정책이 중요한 영역으로 보건정책에서 다루어 질 수는 없을 것이다.

복지 정책의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에 있어서 국가 재정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먹을 권리를 양적인 면만 아니라 질적인 면도 고려하여 국민의 영양을 증진시켜 건강한 국민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때만 영양정책이 복지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을 위하여 생산만이 아니라 소비도 고려한 정책이 세워질 때만이 영양정책의 수립이 가능해 질 것이다.

아직 우리 나라는 영양정책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영양사업을 단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을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나 정부의 규모로 볼 때 무리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문현경, 손숙미, 이애랑, 영양사 분야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현행 국가 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 - 16개 직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가시험개선방안연구원, 1998
2. 장유경, 정영진, 문현경, 윤진수, 박혜련, 지역사회영양학, 신광출판사, 1998
3. 우리 나라 영양사 현황과 대한영양사회 활동, 2000
4. 조정순, 문현경, 한국영양사직의 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연구보고서, 대한영양사회, 1996
5. 문현경, 밀레니엄을 여는 국민영양 발전 전략, 1999, 대한영양사회 학술대회 자료집
6. 청와대 homepage
7. 농림수산부 homepage
8. 보건복지부 homepage